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9월 3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1차 예산 · 결산 소위원회(2025. 11. 13.) 상정 · 심사 · 원안의결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17.)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안이유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본한도+예비한도)는 2025년도 한도인 280조원에서 30조원 증액한 310조원으로 설정함.

나. 2026년도 본한도는 285조원으로 하고, 이중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는 40조원으로 함.

다. 2026년도 예비한도는 기업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보험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5조원으로 설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총액은 2025년도 280조원에서 30조원 증액된 310조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025년도 255조원에서 30조원 증액된 285조원, 예비한도는 2025년도와 동일한 25조원임.

본한도 285조원 중 ‘중장기연불 수출거래’의 계약 체결 한도는 2025년도 20조원에서 20조원 증액된 40조원,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의 계약 체결 한도는 2025년도 235조원 대비 10조원 증액된 245조원임.

미국 금리 인하 전망 및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각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 따른 교역여건 불확실성 등 대내외 복합 위기 극복 필요성과 대미 투자패키지에 따른 보증·보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중장기수출보험 등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약 누적으로 유효계약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통상 유효계약액은 70~80조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방산 수출 계약 지원 등에 따라 100.9조원으로 확대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13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중장기 수출보험 인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및 기금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함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정부가 다음과 같이 제안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동의함.

- 2026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310조원으로 하고, 본한도는 285조원, 예비한도는 25조원으로 하고, 본한도 중 대금결제 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의 계약체결 한도’는 40조원으로 함.

<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전년대비	
			증감액	%
계약 체결 한도(총액)	2,800,000	3,100,000	300,000	10.7
○ 본한도	2,550,000	2,850,000	300,000	11.8
(중장기연불 수출거래*)	(200,000)	(400,000)	(200,000)	(100)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	(2,350,000)	(2,450,000)	(100,000)	(4.3)
○ 예비한도	250,000	250,000	-	-

* 중장기연불 수출거래 :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